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11:00 / 2026. 11. 11.(수) 조간 | 배포 2026. 11. 10.(화) 06:00

’26년 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 온라인 쇼핑몰 등 축산물 판매업체 중심,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점검(11.11.~11.25)
- ’27.1.8.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분기를 맞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11.부터 11.25.까지 약 2주간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위반 의심 업체 및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관련 업체 약 8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 장부 기록 등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7.)되어 ’27.1.8.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판매업체 등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27.1.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축산물이력법 개정사항 홍보자료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4-201-2371)
		담당자	사무관	이래은 (044-201-2346)
			주무관	김경식 (044-201-23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축산물이력법 개정사항 홍보자료**

축산물이력법 일부개정 안내

1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 1. 8. 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 '과태료'	개정 '형사처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력번호 '미표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 적용대상 영업자는 누구인가요?



유통·판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급식·음식점

영업장 면적 7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계약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축산물 통신판매업자
(온라인 쇼핑몰 등)

3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이력번호 확인·동일 번호 표시



축산물 포장처리·판매 시
원래 표시되어 있던 이력번호를 확인해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급식·음식점 이력번호 표시·게시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메뉴·게시판
또는 영업장 홈페이지 등에
7일이내 표시·게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고지·표시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고지하고 배송 상품에도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와 철저한 기록관리로 투명한 축산물 유통에 함께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물품질평가원